

## 전기용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

### 1. 개정취지

국제기준(IEC)과 부합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(K 기준)과 한국산업규격(KS C IEC)의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3조(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) 본문 중
  - “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”를 “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”로 한다
-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 [별표 1] 내지 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개정.
  - [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
    - 개정 : KS C IEC가 명기된 K 60127-1 등 18개 안전기준 (목록:붙임)
  - [별표 2] 참고적용 안전기준
    - 개정 : KS C IEC가 명기된 K 60034-18-22 등 46개 안전기준 (목록:붙임)
    - 제정 : K60670-1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 부속품의 박스 및 외함, 제1부:일반요구사항)
    - 폐지 : K60670(가정용 부속품을 위한 밀폐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유사한 고정된 전기장치)
  - [별표 3]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
    - 개정 : KS C IEC가 명기된 K00011 등 9개 안전기준 (목록:붙임)
    - ※ 개별 안전기준 내역 : 붙임 참조
    - \* 안전기준 개정(안)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ats.go.kr](http://www.ats.go.kr))을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
  - 부칙
    -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    - (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 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.

### 3. 의견제출

상기 개정코져 하는 불임 개정목록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가. 제출기한 : 2003. 7. 30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- 전화번호 : 02-507- 7434(FAX 02-507-6875)